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50

2015년 7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발 의 자 : 김 태 수 의원(찬성자 10명)

○ 발 의 일 : 2015년 4월 7일

○ 회 부 일 : 2015년 4월 9일

○ 상 정 일 : 제26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 6월 24일 상정·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수 의원)

가. 제안 이유

○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6조제7호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한 태 식)

○ 동 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7호에 인용된 법률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제명이 개정되었는 바,1) 이 사항을 조례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조례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업무처리를 보다 체계적이며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조례안임.

〈법률 제명 개정 전·후 비교〉

기존 법률 제명	현행 법률 제명	비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개정일 2012. 12. 21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 12. 21

- ※ 제명 변경사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조항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다른 법령(「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과 달리 법령의 제명에 단체설립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를 반영함.
- 다만, 제6조 제6호의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제명이 개정(2011.8.4.)되었는 바²), 당해 사항을 조례 개정에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²⁾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였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현행 "특수임무수행자"에서 "특수임무유공자"로 변경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수정안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 조례상 인용된 상위 법률 중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6조 제6호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으로 수정함.
-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 9. 기 타 사 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관련 번호 450 제안년월일 : 2015년 6월 24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문 내용 중 인용된 법률 제명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6조 제6호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 는 증명 "으로 함.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제6호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으로 한다.

<u>수정안 조문 대비표</u>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6조(수수료의 면제)	제6조	제6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6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
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		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
<u>청하는 증명</u>		<u>청하는 증명</u>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7. (개정안과 같음)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제3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가 신청하는 증명	가신청하는 증명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8. (개정안과 같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9. (개정안과 같음)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10.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6호의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으로 한다.

제6조제7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신·구조문 대비표</u>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수료의 면제)	제6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
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
가 신청하는 증명	하는 증명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